

조례안 · 일반의안 심사보고서



거창군의회
[총무위원회]

목 차

1	거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무과]	1
2	거창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경제기업과]	4
3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거창군 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문화관광과]	8
4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무과]	12
5	거창승강기베스트밸리 투자 기업체 특별지원계획 동의안	[경제기업과]	20

거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 3. 6.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24. 2. 16.

나. 제출자: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2024. 2. 20.

라. 상정 및 의결일자: 제27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24. 3. 4.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재무과장 이동복]

가. 제안이유

- 지방세 감면정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감면기한이 2023년 12월 31일인 지방세 감면사항 중 서민생활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나. 주요내용

- 1) 2026년 12월 31일까지 감면기한 연장함(안 제2조·제5조·제7조·제9조)
 - 가)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 나) 지역특산물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 다)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 라)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 2) 인용법령 개정, 약칭표현에 따른 용어 정비함(안 제4조·제6조)

- 3) 감면기한 만료에 따른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에 대한 감면사항 삭제함(안 제9조의2·별표)
- 4)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신청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함(안 제10조)
 - 가) 전자송달 또는 자동이체만 신청한 경우: 300원 ⇒ 500원
 - 나)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모두 신청한 경우: 600원 ⇒ 1,000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혜진]

- 본 개정 조례안은 일몰 기한이 만료된 ▲시각장애인 소유 차량 ▲농공단지 대체입주자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시 지방세 세액공제 금액을 상향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거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조, 제7조, 제9조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300원”을 “500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600원”을 “1,000원”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 등”으로 한다.

제9조의2를 삭제한다.

별표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면에 대한 적용례) 제5조, 제7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거창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 3. 6.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24. 2. 16.

나. 제출자: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2024. 2. 20.

라. 상정 및 의결일자: 제27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24. 3. 4.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가. 제안이유

- 산업자원부 지원으로 산업단지에 부족한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다양한 시설이 집적된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함에 따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산업단지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설치, 기능 및 시설을 정함(안 제2조·제3조)
 - 1) 기능: 근로자의 생활편의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근로자와 군민의 여가선용과 교육 및 회의를 위한 시설 제공 등
 - 2) 시설: 문화 및 체육, 편의, 회의 및 교육, 사무 등을 위한 시설
- 휴관일, 이용신청, 이용의 제한을 정함(안 제4조~제6조)

- 이용료 및 감면, 반환을 정함(안 제7조·제8조)
- 위탁을 정함(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혜진]

- 거창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는 ‘2022년 농공단지 패키지 지원’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써, 지난해 12월 공사를 착공하여 다목적체육시설은 4월, 복합문화시설은 12월에 준공 예정임.
- 문화, 체육, 편의, 회의 및 교육 등 다양한 시설이 집적된 복합 문화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 상위법규 및 다른 법률과의 저촉은 없으며 조문 내용이 적합하게 구성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거창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부.

거창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단지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거창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의 설치)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8조에 따라 지정·개발된 거창군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를 말한다)에서 일하는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복지증진 및 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산업단지에 거창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3조(기능 및 시설)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자의 생활편의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2. 근로자와 거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여가선용과 교육 및 회의를 위한 시설 제공
 3. 그 밖에 근로자와 군민 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센터는 문화 및 체육, 편의, 회의 및 교육, 사무 등을 위한 시설로 구성한다.

제4조(휴관일) ①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센터 이용의 활성화와 편의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관일을 변경할 수 있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2. 군수가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
- ② 휴관일을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휴관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로 인한 휴관의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이용신청 등) ① 센터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이용신청을 해야 한다.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자에게 이용 가능 여부를 알려야 한다.

제6조(이용의 제한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자의 잘못으로 취소할 경우 이용료를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상행위 등 센터의 목적 외 용도로 신청하는 경우
4. 이용 조건을 위반하거나 신청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5.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6.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제7조(이용료 및 감면) ① 센터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무인세탁실 이용료는 시세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무인세탁실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8조(이용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1. 센터의 사정에 의하여 시설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전부
2.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부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설이용 예정일 전에 이용자가 취소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 가. 이용 예정일 그날: 100분의 50
 - 나. 이용 예정일 1일 이상 전날: 전부

제9조(위탁)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센터를 관리·운영하기에 적합한 법인이나 단체 등에 그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거창군 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 3. 6.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24. 2. 16.

나. 제출자: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2024. 2. 20.

라. 상정 및 의결일자: 제27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24. 3. 4.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가. 제안이유

- 「국가유산기본법」의 제정(시행 2024. 5. 17.)으로 ‘문화재’라는 명칭을 ‘유산’으로 하는 국가유산체제가 도입됨에 따라 ‘문화재’ 관련 용어를 사용하거나 인용하는 조례를 일괄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문화재’ 용어 및 인용법명을 변경함(안 제1조~제9조)

1) 문화재 ⇒ 문화유산

2) 「문화재보호법」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나.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변경함(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혜진]

-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 등 소중한 유산을 아우르며 선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국가유산체계를 도입하기 위해 「국가유산기본법」(법률 제19409호, 2023.5.16.)이 제정되어 2024. 5. 17. 시행됨에 따라
- 관련되는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입법 경제성을 높이고, 상위 법령과 용어를 통일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확보할 것으로 생각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거창군 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1부.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거창군 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제1조(「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의 개정)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2호 중 “문화재보존”을 “문화유산보존”으로 한다.

제2조(「거창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거창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한다.

제3조(「거창군 문화시설 등 순환버스 운영 조례」의 개정) 거창군 문화시설 등 순환버스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한다.

제4조(「거창군 수승대관광지 운영 및 관리 조례」의 개정) 거창군 수승대 관광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단서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각각 한다.

제5조(「거창군 향토문화유적 보호·관리 조례」의 개정) 거창군 향토문화 유적 보호·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문화재적”을 “문화유산적”으로 한다.

제2조 중 “「문화재보호법」,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한다.

제5조 중 “「문화재보호법 시행령」”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7조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한다.

제6조(「거창군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조례」의 개정) 거창군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거창군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조례」”를 “「거창군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제2조제1호, 제4조제1호·제2호·제3호·제4호·제6호, 제8조제2호, 제14조제1항 중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한다.

제7조(「거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거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재난관리 주관기관 문화재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재난수습 주관부서(제3조제3항 관련)

재난관리 주관기관	재난 및 사고의 유형	주관부서
국가유산청	가. <u>문화유산</u> 시설 사고	문화관광과

제8조(「거창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의 개정) 거창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4호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한다.

제9조(「거창군 계획조례」의 개정)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 중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위원회”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로 한다.

제56조의5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등록문화유산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2024. 3. 6.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24. 2. 16.

나. 제출자: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2024. 2. 20.

라. 상정 및 의결일자: 제27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24. 3. 4.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재무과장 이동복]

①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

1. 제안이유

- 인구유입 정책 실효성과 창업농 재배역량 향상, 농업경영의 기회 제공을 위하여 유통·생활환경·교육·문화 여건이 우수한 지역에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

2. 주요내용

가. 취득개요

- 사업명 :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 위치 : 거창읍 대평리 910-1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24. 5. ~ 2025. 6.
- 취득면적 : 55필지, 56,182㎡

- 사 업 비 : 29,000백만원(국 14,000, 도 1,200, 군 13,800)
(부지기반조성 2,500, 온실신축 11,550, 에너지시설설치 5,950, 용역비 100, 토지매입비 8,900)
- 사업내용 : 토지조성 5.6ha, 온실신축 4ha, 에너지시설설치
 - 토지 기반조성 : 성토, 용수, 전기, 도로구축 등
 - 온실신축 : 1ha 연동형 비닐온실 4개소, 시험동 및 관리동 1개소
 - 에너지시설설치 : 농업용 지열, 공기열 히트펌프 등

나. 취득재산 세부내역 : 55필지, 56,182m² / 첨부1 참조

다. 추진경과

- 토지소유자 사전 협의 : 2023. 9. ~ 10.
- 취득재산 감정평가 : 2024. 1.

라. 향후계획

- 추경예산 편성 및 행정절차 이행 : 2024. 4.
- 토지보상협의 매수 : 2024. 5.

마. 기대효과

- 스마트농업 확산을 통한 농업혁신과 청년인구 유입, 지역 발전 방안
-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를 통해 농업의 혁신성장을 선도할 청년농업인 육성과 스마트팜 확산

3. 관련법규 및 조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제16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5조 및 시행규칙 제7조

4. 위치도 및 현황사진 : 책자 참조

② 거창韓 청년 귀농홈 지원사업 청년귀농인 임시거주용 시설 조성

1. 제안이유

- 청년 귀농인의 초기 정착 부담 경감을 위한 임시거주용 시설 조성으로 청년층 인구 유입 및 지방 인구소멸 위기 극복

2. 주요내용

가. 취득개요

- 사업기간 : 2024. 1. ~ 12.
- 건축규모 : 10호(호당 40㎡내외) / 가조 7호, 웅양 3호
 - 면적 : 400㎡정도(가조 280㎡, 웅양 120㎡)
- 위 치 : 2필지
 - 가조면 기리 535-1(기리창조적 체험휴양마을, 구. 석강초)
 - 웅양면 한기리 915(하성단노을생활문화센터, 구. 하성초)
- 사 업 비 : 1,200백만원(지방소멸대응기금 1,200)
- 주요기능 : 청년 귀농인 임시거주용 시설

나. 취득재산 세부내역

(단위:㎡, 천원)

구분	재산종별	재 산 의 표 시			수량	기준가격	취득시기	취득사유	재 산 소유자
		소 재 지	용도	면 적					
계				400		1,200,000			
취득 (신 축)	건물	가조면 기리 535-1	주택 (숙소)	280	7개동	840,000 (동당 120,000)	2024	거창韓 청년 귀농홈 지원사업	거창군
		웅양면 한기리 915	주택 (숙소)	120	3개동	360,000 (동당 120,000)	2024		

※ 사업대상지 2개소는 기존 균유지 활용

다. 추진경과

- 2023. 11. : 지방소멸대응기금 공모 선정
- 2024. 1. : 사업대상부지 선정

라. 향후계획

- 2024. 2. ~ 3.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2024. 3. ~ 5. : 실시설계 추진
- 2024. 5. ~ 12. : 착공 및 준공

마. 기대효과

- 청년 귀농인 임시거주용 시설 조성으로 귀농귀촌 교육 및 홍보와 연계 추진하여 청년 귀농인 유치 및 안정적 정착 지원

3. 관련법규 및 조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제16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5조 및 시행규칙 제7조

4. 위치도 및 현황사진 : 첨부 참조

③ 상동 도시재생사업(상동 아름드리 숲골 어울림센터) 변경

1. 제안이유

- ‘20년 국토부 공모선정 “상동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일환으로 진행중인 「상동 아름드리 숲골 어울림센터」 주변 부지를 추가 확보하여 도시재생 시설의 공동체 활동공간으로 조성하여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취득개요

- 위 치 :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95-3번지
- 사업기간 : 2021. ~ 2024.

- 사 업 비 : 600백만원(토지, 지장물, 이주비 포함)
- 취득면적 : 313m²(토지편입면적)
- 사업내용 : 주민공동체 활동 공간 조성(주차장 및 공원)

나. 취득재산세부내역

(단위:m², 천원)

구분	재산 종별	재 산 소 재 지				용도지역	기준가격 (공시지가)	평가금액	비고
		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취득	토지	상림리 95-3	대	313	313	제2종 일반 주거지역	207,832 (664)	408,465 (1,305)	
	건물	상림리 95-3	주택	109	109		170,000	-	

※ 토지평가금액 : 2021년 상동 도시재생 인정사업 감정평가금액 적용

※ 공시가격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건물 산정금액 적용

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내역(사업면적 874m² → 1,187m²(313증))

구분	재산 종별	재 산 의 표 시			기준가격 (천원)	취득 시기	취득 사유	비고
		소 재 지	지 목	면 적 (m ²)				
총계				1,187 /286				
기존	토지/ 건물	소계		874/ 177				
기존	토지	거창읍 상림리 96-1번지	대	271	353,655	'21년 4월말	생활 SOC 확충 및 주민 공동체 공간 조성	취득
		거창읍 상림리 92번지	대	553	222,693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95-1번지	대	50	19,900			거창군
	건물	거창읍 상림리 96-1번지	경로당	177	108,064	거창군		
변경 (추가)	토지	거창읍 상림리 95-3	대	313	207,832	'24년 5월경		취득
	건물		주택	109	170,000			

라. 추진경과

- 2020. 12. : 도시재생 인정사업 공모 선정
- 2021. 6.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2022. 12. : 어울림센터 착공
- 2023. 12. : 토지소유자 보상 요청
- 2024. 1. : 감정평가 의뢰

마. 향후계획

- 2024. 4. ~ 5. : 제1회 추경예산 확보 및 협의보상 완료
- 2024. 5. ~ 6. : 건축물 철거 시행

바. 기대효과

- 어울림센터 부지 확장으로 경관개선 및 공동체 활성화 기반 마련

3. 관련법규 및 조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제16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5조, 시행규칙 제7조

4. 위치도 및 현황사진 등 : 첨부 참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혜진]

①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 건은

- 현 정부는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를 통해 농업의 혁신성장을 선도할 청년농업인 육성과 스마트팜 확산을 목표로 설정하고, ‘스마트팜’을 통해 청년을 농업·농촌으로 유입하고자 오는 ‘27년까지 40세 미만 청년농 3만 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임.

- 해당 토지는 우리군이 '24~'26년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공모사업에 필요한 부지로써, 고령화, 인력부족, 기후변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됨.

② 거창韓 청년 귀농홈 지원사업 청년귀농인 임시거주용 시설 조성

- 청년 귀농인을 위한 임시거주 시설 10개동(가조면 7개동, 웅양면 3개동)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생활비와 운영자금, 농지와 시설확보 등 초기 자금 부족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농업인이 우리 지역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고, 정착률을 높이는 데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됨.

③ 상동 도시재생사업(상동 아름드리 숲골 어울림센터) 변경

- 거창읍 상림리 95-3번지 토지와 건물은 현재 신축 중인 상동 아름드리 숲골 어울림센터 바로 앞에 위치하여 건물의 시야를 가리고, 차량진입에 방해가 되고 있으므로
- 진입로를 확보하고 공동체의 활동공간으로서의 활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매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거창승강기베스트밸리 투자 기업체
특별지원계획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4. 3. 6.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2024. 2. 26.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24. 2. 27.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제27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24. 3. 4.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가. 제안이유

- 현대엘리베이터서비스(주)가 투자하는 회사로 거창공장에서 즉시 생산을 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하여 기업의 매출 증대 및 거창군 세수 증대에 기여하고
- 대기업이 투자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승강기고·대학생의 거창에서의 취업으로 이어지는 청년인구의 유출 방지 및 인구 유지
- 기존 승강기업체와 에스컬레이터 부품·설치·물류업체와의 시너지 효과 등이 예상되므로 투자기업에 특별지원 필요

나. 주요내용

1) 지원대상

○ 거창승강기베스트밸리 투자 기업체(K-Escalator(가칭))

2) 투자계획 : 투자금액 58.6억 원(매입 44.6억 원 + 신설 14억 원)

투자 예정 금액	연간생산량	연간고용인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륜엘리스 매입 : 44.6억 원 - 토지 9.9 건물 34 기계 등 0.7 신설 설비 투자 : 14억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 300대(월 25대) - 7천만 원 × 300대 = 210억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인원 : 12명 - 임원 1, 제조 5, 판관 4, 연구 2

○ 감정평가결과(평가기관 : (주)나무감정평가법인)

① 대륜엘리스 매입에 대한 평가결과

(단위 : 원)

구 분	평가액	취득가액	면적 또는 수량	취득가액과의 차이
4종류	4,463,863,740	5,464,400,632		
토 지	989,694,900	972,611,000	8,046㎡	1.8%
건 물	3,402,438,840	4,339,978,636	3,674㎡	-21.6%
기계기구*	63,030,000	140,690,995	3식	-55.2%
비 품**	8,700,000	11,120,001	6식	-21.8%

*기계부품 3식 : 천정코레인(호이스트),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 엘리베이터는 건물가액 포함

**비품 6식 : TV, 냉장고, 워시타워, 공기청정기, 침대, 사무용 가구

② 에스컬레이터 조립 Line 구축 및 옥외 Test tower 신설

(단위 : 원)

구 분	공장설비투자액	수량	비 고
2종류	1,400,000,000		
기계기구	1,200,000,000	크레인 5억, 용접라인 4억, 조립라인 1억, 옥외Test tower 2억	
비 품	200,000,000	지게차 1억, 사무기구 02억, 컴퓨터 등 02억, 공조시설 외 06	

3) 지원계획

○ 지원내용 : 거창공장 매입 금액 44.6억 원 지원(감정평가액)

○ 지원시기 : 2024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 의회 의결 이후

○ 지원방법 : 균의회 동의를 받아 결정

4) 사후관리

- 입지보조금 : 부동산 부기등기 및 이행보증증권발행
- 설비보조금 : 기계장비 관리번호 부여 및 라벨 부착

“사후관리기간”이란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보조금 또는 용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에게 보조금 및 용자금 정산을 통보한 날부터 5년까지를 말한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혜진]

- K-Escalator는 현재 설립 예정인 회사로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자본금 등 기업 정보가 없어 성장성을 가늠하기 어렵긴 하나, 기업 유치 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청년인구의 유출 방지 및 인구 유지, 승강기 벨리의 시너지 효과, 거창군 세수 증대 등 다양한 이점을 고려하여 원안과 같이 동의하되
- 향후 명백한 투자의향 확보와 보조금 지급 후 철저한 사후관리가 요구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